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5년 4월13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기술정책과장 천영길(044-203-4510), 사무관 박두강(044-203-4503)

2015년도 노후장비 일제정비 · 재활용 사업 공고

- '14년도에는 총 74대 이전 통해 92억 예산 절감 효과 거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노후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후장비 일제정비 및 이전 재활용 사업**'을 '15. 4. 13.부터 실시한다.

* 산업기술 개발기획, 연구개발, 시험·평가, 시생산·인증, 사업화에 소요되는 산업기술개발장비 중

□ 이에 따라 노후 장비를 타 기관으로 이전·재활용하길 원하는 기관(연구소, 테크노파크, 대학 등)은 **'15. 5. 12. 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KEIT) **연구장비관리센터**(www.etube. re.kr)**에 장비 이전신청**을 하면 된다.

○ 신청 대상은 산업부로부터 지원받아 구축한 산업기술개발장비로, 해당 사업(기반구축, 기술개발, 지역사업 등)을 종료한 장비다.

○ 신청된 장비에 대해서는 KEIT 중앙장비심의위원회(중장위)가 노후 원인, 수요기관의 활용능력 등을 기준으로 이전·재활용 여부 및 양수기관 선정을 심의하기로 했다.

< 노후장비 이전 절차 >

4.13.~5.12.	6월중	6월~7월	7월	7월~10월말	11월~
장비 이전신청 (보유기관)	장비 이전여부 심의 (장비센터)	이전대상장비 공고 및 장비 양수신청 (산업부/수요기관)	장비 양수기관 선정 (장비센터)	장비이전 (양수기관)	활용실적 관리 (장비센터)

□ 산업부는 이전 대상 장비 보유기관과 수요기관을 연결하고, 양수기관에 장비 이전과 가동에 필요한 **이전비·수리비 등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 이번 노후장비 이전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이하 e-Tube, www.etube.re.kr, '13.11.21.개설)를 통해서 진행되며 **수요기관 발굴시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도 연계협력**한다.

□ 산업부는 노후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동 사업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이전·재활용에 나서는 등 **장비의 공동이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특히 지난 **'14년도의 경우, 총 74대의 장비를 40개 기관에 이전하는 성과**를 거둬 정부 지원정책의 좋은 사례로 평가 되고 있다.

* 구입금액 기준 총 9,207백만원의 노후장비가 새로운 기관에서 재활용

□ 한편,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금번 일제정비사업을 통해, **장비구축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 장비활용의 극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 노후장비 일정정비 및 이전 재활용 사업 공고문 1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박두강 사무관(☎ 044-203-45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5 - 214호

『노후장비 일제정비 및 이전 재활용 사업 공고』

활용률이 낮은 노후장비를 수요가 있는 기관으로 이전 재활용, 국산장비 해외 ODA 지원 또는 매각·폐기하는 일제정비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한 산업기술개발장비 중 활용률이 낮은 노후장비를 발굴하여 활용 수요가 있는 국내외 기관에 이전함으로써 장비 활용도를 높이고, 활용 불가능한 장비는 매각·폐기함으로써 장비관리 효율성을 제고

○ 해외 산업기술협력 국가의 산업 육성에 필요한 국산장비의 해외 ODA 추진으로 해외시장 진출 도모

□ 대상 장비

○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구축된 장비 중, '14.12월말 현재 해당 사업기간이 종료된 장비
- 다만, 신뢰성 기반구축사업 등과 같이 사업기간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장비 설치 후 3년 이상 경과된 장비

※ 우선 이전대상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유휴·불용장비, '13년 정부종합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유휴·불용장비, 기타 국회·주무부처·지자체·전담기관 등의 조치가 요구된 유휴·불용장비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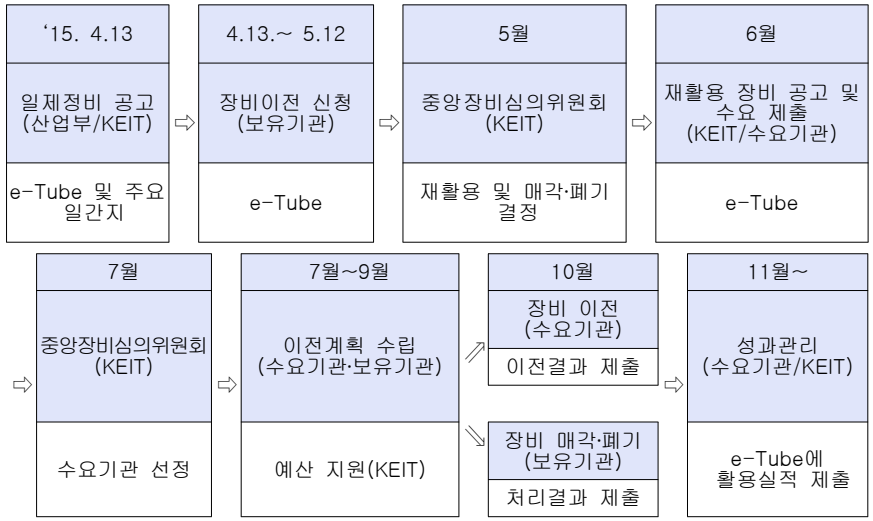
○ 지원규모 : 수요기관의 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로, 장비 당 취득가의 10% 이내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 (예산범위 내 지원)

○ 지원항목
- (장비이전비)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비
- (부 품 비) 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부품비 (소모품비 제외)
- (장비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 장비 특성에 따라 수리비, 부품비, 교육비 등 지원항목 선택

□ 추진절차

○ 사업 공고('15.4.13.)→ 이전신청 접수(4.13~5.12)→ 이전 대상장비 선정(5월)→ 이전 대상장비 공고 및 이전 재활용 신청 접수(6월)→ 이전기관 선정(7월)→ 이전 재활용 및 성과관리
※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추진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보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산업기술개발장비를 도입한 기관으로 노후장비를 보유한 기관

○ 수요기관 : 교육기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보훈단체, 그밖의 비영리기관

□ 참고사항

○ 보유기관 및 과제책임자에게 장비 유휴 또는 불용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며,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 없음(다만, 당초 공동활용 목적으로 도입된 장비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유기관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

○ 보유기관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정하는 기준에서 상호 관리전환, 무상양여 등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장비양도 확정이전에 기관의 자산처분 승인 등 필요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 수요기관은 이전 후 3년간 KEIT(연구장비관리센터)에 장비활용실적을 제출

3. 신청방법

□ 신청요령

○ 보유기관 : 제출서류 작성 후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 홈페이지(www.etube.re.kr)에 신청

○ 수요기관 : 제출서류 작성 후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 홈페이지(www.etube.re.kr)에 신청

※ 제출서류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tube.re.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eit.re.kr > 주요사업 > 사업공고)에서 서식 다운로드

※ 수요기관은 이전 재활용 장비가 확정되는 6월중 별도 공고에 따라 신청

□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보유기관 : 장비 이전(양도) 요청서 1부
- 수요기관 : 장비 이전(양수) 요청서, 장비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각 1부

※ 수요기관은 이전 재활용 장비가 확정되는 6월중 별도 공고에 따라 제출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03, park1991@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센터 (053-7189-8257, etube@keit.re.kr)

□ 신청기간

○ 보유기관 : 2015. 4월 13일 ~ 5월 12일 (30일간)
○ 수요기관 : 2015. 6월중 별도 공고

□ 신청 시 참고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름

○ 수요기관이 이전받은 장비를 공동활용장비로 활용할 경우 및 이전비용 일부를 부담할 경우에는 심의시 가산점 부여

4. 관련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6조(장비 통합관리 등)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9장(장비 처분)
○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의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등의 규정

제출서류 양식 (보유기관)

장비이전(양도) 요청서

장비명(국문)			
장비명(영문)			
모델명		설치 년도	'00.00.00
e-Tube 자산관리번호*	0000-0-0000	NTIS 자산관리번호*	
장비관리부서		현재 설치장소	
장비담당자** 직책/성명	/	연락처 전화/메일	/
장비 상태 ☑	□ 사용가 □ 수리필요 □ 부품필요 □ 수리불가	현재 장비사진	별첨
사업과제명			
사업관리기관		사업기간	'00.00.00 ~ '00.00.00

당 기관에서는 상기 산업기술개발장비의 양도(관리이전)를 요청합니다.

2015년 4 월 일

장비보유기관명 :

장비관리부서장 : (인)

장비보유기관장 : (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미등록 자산의 경우 미기재 ** 장비담당자는 장비관리부서와 다를 수 있음.